##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18-104

제 출 자

거창군수

#### 1. 제안 이유

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·재기재한 사항을 정비하고, 「지방재정법」개정(2014. 5. 28.) 부칙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·재기재한 사항 삭제 정비함
- 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함(안 제5조)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와 부칙(제12687호, 2014. 5. 28.) 제4조, 「의료급여법」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 예산 1,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191백만원, 도비 48백만원, 군비 767백만원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과 합의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18. 10. 29.~11. 19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: 붙임
  - 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  - 5)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전부 반영함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의료급여법」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수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(이하 "기금담당관"이라 한다)은 「의료급여법」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·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.
  -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 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3조(지출)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, 부당이득금, 구상금, 그 밖에 의료 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 (이하 "기금출납원"이라 한다)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  -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리·운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5조(존속기한)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

지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거창 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.

# [별지 서식]

영수필통지서 목지정책과							
제	호		년도				
성 명							
주 소							
의료급여 기금	부당이득금□ 구상금□ 대지급금 □						
상환금 내용	총액	기 상환액	미납액	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					
납입금액	금	원				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년 월 일 거창군수							

납입통지서 복지정책과							
제 호 년도							
성 명							
주 소							
의료급여 기금	부당이득금	-□ 구상금□ 대지급금□					
상환금	총액	기 상환액 이 납 액					
내용				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					
납입금액	금	원				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							
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거창군수							

수	<b>3</b> ( <u>F</u>	거창군 부지정책과			
호		년도			
부당이득금	□ 구상금□	대지급금□			
총액	기 상환액	미 납 액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			
금	원				
금액을 1	년 월 <b>일</b>	]까지			
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
ᄖ	위 이				
거창군수					
	호 부당이득금 총액 의료급여 금액을 1	호 부당이득금□ 구상금□ 총액 기 상환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기 금액을 년 월 일 에 납부하시기 비 년 월 일			

- 1. 부과근거
  - -부당이득금·구상금
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, 「민법」 제741조)
  - -대지급금
  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0조, 제21조)
- 2. 납부장소
  - -농협 전지점
- 3. 체납처분 등
  - -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- 1. 부과근거
  - -부당이득금·구상금
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, 「민법」 제741조)
  - -대지급금
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0조. 제21조)
- 2. 납부장소
  - -농협 전지점
- 3. 체납처분 등
  - -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- 1. 부과근거
  - -부당이득금·구상금
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, 「민법」 제741조)
  - -대지급금
  - (「의료급여법」 제20조, 제21조)
- 2. 납부장소
  - -농협 전지점
- 3. 체납처분 등
  - -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#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의료급여기금 운영

나. 관련 조문 : 제1조(목적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	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총	비용	767	787	807	827	827	4,015
세출	군비	767	787	807	827	827	4,015

- 산출기초 : 진료비 군비부담금(전체진료비 4퍼센트), 부당이득금 반환금, 예금이자

### 3. 관련 의견
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,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 수행하고자 함.

# Ⅱ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,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2019년도 군비 767백만원 소요
- 2019년 전체예산 1,006백만원 확보 예정 (국 191, 도 48, 군 767)

작성자 :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